

# 주간건설 *Review*

441호 2016.6.24(금)



**(사)한국건설경영협회**

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

홈페이지 : <http://www.kfcc.or.kr>, 연 락 처 : 02-771-7936

주 소 : (121-916)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-2103

■ 업계 동향

- ▶ (주)한라, 150억원 유상증자하고 직원에게 100만주 무상증여
- ▶ 계룡장학재단,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 장학금
- ▶ 현대건설, 퇴직임원 모임 건우회 창립20주년 행사

■ 건설경제 일반동향

- ▶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(안) 확정

■ 건설 제도 정책 동향

- ▶ 국민권익위, 「입찰·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」 권고
- ▶ 대가지급 지연이자와 지체상금 산출기준, 형평성 논란
- ▶ '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' 개최

# 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6.6.18.(토)~2016.6.24(금)>

제441호 2016.6.24(금)

<업계 동향>

## ◆ (주)한라, 150억원 유상증자하고 직원에게 100만주 무상증여

- 6월22일 (주)한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'임직원에게 대한 제3자 배정방식'으로 300만주(150억원)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였음
- 특히 이번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 가격은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6월9일 (주)한라의 주식가격인 4,430원보다 10% 이상 비싼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률 130%로 전임직원들이 회사 돕기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였고, 사주인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은 그 답례로 보유 중인 주식 100만주, 44억원어치를 임직원에게 무상증여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음
- (주)한라는 금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여 준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호응과 회사에 대한 믿음이 경영진들을 크게 고무시켰으며, 향후 회사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힘



정몽원 회장

## ◆ 계룡장학재단,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 장학금

- 6월22일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은 본사 사옥에서 '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'에서 입상한 대전지역 초·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, 격려하였음
- 이번에 체육 격려장학금은 지난 5월28~31일 강원도에서 열린 제4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메달을 획득한 대전시 선수들에게 지급되었음



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대전시 선수들과 함께한 이인구 명예회장(사진 앞줄 가운데)

- 한편 이인구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계룡장학재단은 1992년 12월 설립 이래

올해까지 모두 5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, 오는 6월27일에도 충남도 우수입상학생 5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

### ◆ 현대건설, 퇴직임원 모임 건우회 창립20주년 행사

○ 6월20일 현대건설은 계동사옥 본관 대강당 무궁화홀에서 퇴직 임직원들의 모임인 ‘건우회’ 창립 20주년을 맞아 회원 470여명과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‘홈커밍 데이(Home-coming day)’ 행사를 개최하였음



○ ‘건우회’는 1996년 6월 창립한 현대건설 퇴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로 대부분 회원이 현대건설의 고속성장기인 1960년대에 고(故) 정주영 명예회장과 함께 국내외에서 활동한 건설업계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음

○ 15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인 건우회는 매년 1월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3월 정주영 명예회장 묘소참배, 문화탐방 및 각종 체육대회 등 12차례의 연례 행사를 개최하며 건설업계 최대 OB모임으로 알려져 있음

○ 한편, 이날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“건우회가 20주년을 기점으로 더욱 성장해 건설업계 OB모임의 큰 축이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자식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보는 선배들의 성원에 보답해 현대건설을 10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”고 밝힘

# 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6.6.18.(토)~2016.6.24(금)>

제441호 2016.6.24(금)

## <건설경제 일반동향>

### ◆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(안) 확정

- 6월17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('16~'25년)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「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(안)」을 마련, '철도산업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
- 「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」은 「철도건설법」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,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,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음

#### <주요내용>

##### □ 세부추진내용

- ① 기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,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·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
  -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('16년말)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,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병목 구간 해소,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 추진
  -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(200km/h 이상)를 건설하고,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(230km/h)하는 사업도 추진 예정
- ② 광역 교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(급행노선 포함)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에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 확대
  -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,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 완공
  - 대량의 통행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권·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
- ③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되어 전철운영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을 전철화시키는 사업도 추진
  - 장항선·경전선·동해선·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하여 해당 노선의 열차속도 향상, 전철운영, 열차운영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영효율성 확보
- ④ 산업단지·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

- 국내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, 산업단지,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 추진

### □ 기대효과 및 전망

-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2016~2025년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
-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, 일반철도 38조원, 광역철도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,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, 지방비 3조원, 민자유치·공기업·기타 24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
- 투자재원 중 국고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보다 규모를 축소(2015년까지 23.6조원, '16~'20년 22.0조원, '21~'25년 21.1조원)
-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는('15년도말 현재 19조원대)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심대한 장애인 점을 감안, 2016년 이내에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및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등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 예정
- 총 36개 신규사업, 44조 6,313억원 투자계획이며,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40조 2,127억원으로 추산되는데, 세부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122조 628억원, 임금유발효과 18조 1,499억원, 고용유발효과 1,082,017명임

<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변화>

구 분		현재	장래	증가
철도연장 (km)	합 계	3,729.3	5,363.5	1,634.2
	고속철도	368.5	708.7	340.2
	일반철도	3,302.7	4,195.8	893.1
	광역철도	58.1	459.0	400.9
복선화율(%)		58.0	71.0	13.0
전철화율(%)		70.0	82.0	12.0

<경제적 파급효과>



□ 36개 신규사업 현황

	노선명	사업구간	사업내용	연장(km)	총 사업비(억원)
<b>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</b>					
고속	경부고속선	수색~서울~금천구청	복선전철	30.0	19,170
		평택~오송	2복선전철	47.5	29,419
일반	중앙선	용산~청량리~망우	2복선전철	17.3	13,280
	수서광주선	수서~광주	복선전철	19.2	8,935
	경전선	진주~광양	전철화	57.0	1,524
		광주송정~순천	단선전철화	116.5	20,304
	장항선	신창~대야	복선전철화	121.6	7,927
	동해선	포항~동해	전철화	178.7	2,410
	문경·점촌선	문경~점촌~김천	단선전철화	73.0	13,714
	경전선	보성~목포*	단선전철화	82.5	1,702
경북선	점촌~영주*	단선전철화	56	980	
소계(11개 사업)				799.3	119,365
<b>② 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</b>					
일반	어천 연결선	어천역~경부고속선	복선전철(직결선)	2.4	1,540
	지제 연결선	서정리역~수도권고속선	복선전철(직결선)	4.7	2,800
	남부내륙선	김천~거제	단선전철	181.6	47,440
	강원선	춘천~속초	단선전철	94.0	19,632
	평택부발선	평택~부발	단선전철	53.8	16,266
소계(5개 사업)				336.5	87,678
<b>③ 노후시설 개량 사업</b>					
일반	충북선	조치원~봉양	고속화	82.8	4,606
	호남선	가수원~논산*	고속화	29.3	4,596
소계(2개 사업)				112.1	9,202
<b>④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</b>					
광역	수도권광역급행철도	송도~청량리	복선전철	48.7	58,319
	수도권광역급행철도	의정부~금정	복선전철	45.8	30,736
	신분당선	호매실~봉담	복선전철	7.1	6,728
	신분당선서북부 연장	동빙고~삼송	복선전철	21.7	12,119
	원종홍대선	원종~홍대입구	복선전철	16.3	21,664
	위례과천선	복정~경마공원	복선전철	15.2	12,245
	도봉산포천선	도봉산~포천	복선전철	29.0	18,076
	일산선 연장	대화~운정	복선전철	7.6	8,383
	서울 9호선 연장	강일~미사*	복선전철	1.4	1,891
	충청권 광역철도(2단계)	신탄진~조치원 <sup>1)</sup>	2복선전철(기존선)	22.5	5,081
소계(10개 사업)				215.3	175,242
<b>⑤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</b>					
일반	새만금선	대야~새만금항	단선전철	43.1	6,160
	구미산단선	사곡~구미산단	단선철도	11.0	2,472
	아산석문 산단선	합덕~아산·석문산단	단선철도	36.5	6,991
	대구산업선	서대구~대합산단	단선전철	40.1	8,164
	동해신항선	삼척해변정거장~동해항	단선철도	3.6	578
	인천신항선	월곶~인천신항	단선철도	12.5	5,470
	부산신항 연결지선	부산신항선~부전마산선	단선전철(연결선)	4.4	1,502
소계(7개 사업)				151.2	31,337
<b>⑥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</b>					
일반	동해선	강릉~제진	단선전철	104.6	23,490
소계(1개 사업)				104.6	23,490
<b>총 계(36개 사업)</b>				<b>1,719.7</b>	<b>446,314</b>

\* 별표 4개 사업은 공청회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

1)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에서 계룡~논산구간 제외

※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, 2.4일 공청회 대비 총사업비는 3.7조원 감소(74.1→70.4조원)

# 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6.6.18.(토)~2016.6.24(금)>

제441호 2016.6.24(금)

<건설산업 제도·정책 동향>

## ◆ 국민권익위, 「입찰·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」 권고

- 6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, 한국자산관리공사, 각 공직유관단체에 「입찰·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」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힘

### <‘공공조달 입찰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’ 실태 및 개선방안>

#### □ 실태(문제점)

- 일부 공기업 등이 입찰 공고 시 입찰보증금 납부비율을 ‘입찰금액의 ○% 이상’으로 표시해 입찰참가자의 과다 납부를 유발하고 초과 납부된 입찰보증금 전액을 기관 수입으로 귀속
- 낙찰 후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담당자의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 고지를 누락하는 등 입찰보증금 징수관리 부실

#### □ 개선방안

- 입찰공고시 입찰유의서에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률(입찰금액의 ○%)로 명기토록 함
-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공공기관 귀속을 제한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물품구매 입찰유의서, 용역 입찰유의서 등을 개정토록 함
- 아울러 각 공공기관 계약규정에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징수되지 않은 입찰보증금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토록 함

## ◆ 대가지급 지연이자와 지체상금 산출기준, 형평성 논란

- 현행 국가계약법령을 보면,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 때주는 ‘지연보상금 금리’와 건설사가 공사 이행을 지체할 때 납부하는 ‘지체상금 금리’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,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
- 이에 따라, 형평성을 맞추려면 ‘지체상금 금리(지체상금률)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
- 이는 19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(새누리당 백맹우 의원 대표발의)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, 당시 기획재정부 소위에 회부되었으나, 대가지급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의

성격 차이, 주요 해외국가의 지체상금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

<‘대가지급 지연이자와 지체상금’ 비교>

구분	대가지급 지연이자	지체상금
관련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가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</li> <li>- 대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(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)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</li> <li>-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</li> </ul>
기준 금액	◦ 지급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 (기성액 제외)	◦ 계약금액(전체)
금리	◦ 연 3~5% (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연 36.5%</li> <li>* 공사계약의 경우,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(공사 : 1000분의 1)과 지체일수(연 365일)를 곱할 경우, 연 36.5%의 지체상금률이 산출됨</li> </ul>

◆ ‘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’ 개최

◦ 정부는 6월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‘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’를 열고, 인허가·신고제 합리화 및 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, 강원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

<주요내용>

□ 건축허가 협의 간주 도입

- 관계기관 협의시 협의기한 (15일)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이가 된 것으로 간주
- ※ (현행) 건축물 건축시 의제되는 타 인허가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협의 필요

□ 건설공사대장의 신고항목 간소화

- 존치할 필요가 큰 항목만 남겨 신고항목을 축소하고, 신고누락 방지 위해 모바일 등을 이용한 ‘사전 알리미 서비스’제도화 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(‘17.상반기))
- ※ (현행) 건설업자는 ‘건설현장 공사정보’를 기재한 신고서(건설공사대장)를 발주자·건축주에게 신

고 의무화

- 신고항목이 평균 800개 정도 되고, 대부분 내용을 발주자·건축주가 기 보유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신고(별도 전산망)토록 하여 행정부담 가중

#### □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거 마련

-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('16.12월))
- ※ (현행)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없어,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사업 부담 가중